

제 9 대 한국중독심리학회장 후보 등록 공고

안녕하십니까?

한국중독심리학회입니다.

학회원님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.

본 학회는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칙 제 10조(임원의 자격 및 선출) 4항에 근거하여 차기 제9대 학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후보 등록을 공고하오니,

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등록근거 및 전문회원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제반 서류를 학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등록기한 : 2020년 11월 13일(금)까지
2. 등록방법 :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(addictpsy01@daum.net)
- 추천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후보자 등록 근거

- 회칙 제 10조(임원의 자격 및 선출) 4항.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.

* 전문회원의 회원자격 유지 확인

1. 연회비 완납 확인

- 회칙 제 8조(회원의 의무) 3항.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2. 윤리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

- 회칙 제 8조(회원의 의무) 4항.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 정회원은 연간 연수평점을 취득해야한다. 연간 연수평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.

- 자격 유지에 관련한 운영 세칙

제 10조 (자격의 유지)

1.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자격 취득일 다음 해부터 3년 단위로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, 24시간 이상의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시간(모학회 연차학술대회,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, 기타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등)을 이수하여야 한다.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당해년도 12월 31일부로 자격이 정지되나,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즉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2.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윤리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3.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모학회 및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주의, 자격 정지, 자격 박탈, 회원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